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46
----------	-------

발의연월일 : 2021. 8. 12.

발의자 : 진성준 · 천준호 · 소병훈

박상혁 · 김두관 · 김정호

우원식 · 조오섭 · 진선미

허영 · 이규민 · 이동주

김원이 · 이해식 · 이학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민간과 군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항이 전국에 8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협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민군 간 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군 항공작전기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민간이 사용 중인 항공작전기지는 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3조의2(민군 간 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